

◇주요내용

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제한(제26조제3항제8호 신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외의 장애인을 새로 고용한 경우에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

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제29조제4항 전단)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의 시작 1개월 전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고용안정장려금 산정에 포함하는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2주에서 2개월로 확대함.

다. 구직급여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 인상(제68조제1항)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의 촉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을 12만원에서 13만2천원으로 인상함.

라. 육아휴직급여 인상(제95조제1항제2호)

육아휴직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수준을 월 통상임금의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인상하고,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을 월 10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육아휴직급여의 하한액은 월 50만원에서 월 70만원으로 인상함.

마.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 인상(제95조의2 후단)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문화를 확산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피보험자에게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을 월 20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인상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고용노동부 이 재 갑
장 관

●**대통령령 제2945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한다.

제7조제2항 중 “하수급인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인”을 “하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제15조제4항 중 “제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을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조업
2. 임업
3.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정하는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의 종류 중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제1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

제18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실시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재보험료율 인하율”을 “산재보험료율 인하율(이하 “인하율”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재해예방활동을 중복 실시한 경우(같은 재해예방활동을 2회 이상 실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계산식에 따른 인하율 중에서 더 높은 것을 적용하며, 제1항제3호의 재해예방활동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재해예방활동을 중복 실시한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인하율에 제3호의 인하율을 합산한다.

제18조의2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

$$\frac{10 \times \text{전년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일수}}{100 \times 365}$$

제18조의3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제18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경우를”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호 및 제3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조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29조의2제1항 중 “사업주는”을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으로, “보험료 지원”을 “고용보험료의 지원”으로 한다.

제29조의3제1항 중 “사업주는”을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사업주가”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법 제33조제1항”을 “법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법 제33조제1항”으로, “있는 사업주의 범위는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주로 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4조의2제17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가입자 자료

18.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자료 및 주택건설공사 실적 자료

1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 자료 및 문화재수리 실적 자료

제54조의2제20호(중전의 제17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근로참여자에 관한 자료

별표 2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법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1호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근로자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근로자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2)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근로자 1명당 5만원, 100만원 한도	근로자 1명당 8만원, 200만원 한도	근로자 1명당 10만원, 300만원 한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제3호 및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사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 및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 특례적용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산업재해예방으로 인정되는 활동에 노동시간 단축을 추가하며, 소규모 사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도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의 일괄적용 대상 확대(제6조제1항)

사업주가 보다 편리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률 제고를 통한 재해노동자 보상 강화 등을 위하여 동일한 사업주가 기간이 정해진 각각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종류를 건설업 전체로 확대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의 특례적용 대상 사업 및 산업재해예방으로 인정되는 활동 확대(제15조제4항, 제18조의2제1항제3호 신설)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 및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해당 사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는 등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 사업의 범위를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제조업에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임업 등으로 확대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으로 인정되는 활동에 추가함.

다. 산업재해발생 실적 산정 시 산업재해의 범위에서 업무상 질병 제외(제17조제3항제3호)

산업재해 발생 실적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것은 사업주 등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나, 산업재해를 은폐하게 하는 유인이 되는 문제도 발생함에 따라, 산업재해 은폐 유인을 축소하고 산업재해 예방 노력의 증진을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 등 특정 질병을 한정하던 것을 같은 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확대함.

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개선(제29조의2제1항 및 제29조의3제1항)

근로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 등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해당 사업의 사업주만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도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확대(제45조제1항)

보험사무를 직접 처리함에 따라 전문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 문제를 개선·보완하는 등 사업주가 보다 효율적으로 보험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